2016. 6. 27. (월) 10:00~

제2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

의안번호 제2016 - 30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개정이유

○ 민선6기 후반기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여 능동적,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실과소명을 변경함(안 제3조, 제4장 제1절·제2절·제4절)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실, 창조산업과 ⇒ 기업도시과,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녹색환경과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나.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제7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획감사실 ⇒ 행정과

○ 기업관련 업무 조정: 승강기경제과 ⇒ 기업도시과

○ 교 통 및 운 수 : 안전총괄과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행사 기획·유치: 문 화 센 터 ⇒ 문화관광과

○ 박물관, 문화원사,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산업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진흥 및 기획: 창조산업과 ⇒ 평생교육센터

○ 항노화산업: 창 조 산 업 과 ⇒ 농업기술센터

○ 도서관 업무: 문 화 관 광 과 ⇒ 평생교육센터

○ 청소년 업무: 체육청소년사업소 ⇒ 평생교육센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6 - 3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개정이유

○ 조직진단 결과반영 및 민선6기 후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 증원

○ 현행: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599명(본청262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9명)

나. 연구직 정원: 1명 감원

○ 현행: 6명(본청1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2명)

○ 조정: 5명(본청2명, 직속기관2명, 사업소1명)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민선6기 후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6 - 32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개정이유

○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에 따른 서식 변경

3. 주요골자

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전문위원 검토요지

나. 성별분리 통계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한 관련법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고,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항목을 관련 서식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6 - 34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

3. 보고사항

가. 시 설 명: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나. 위 치: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다. 시설규모

구 분	부 지	건 물			정 원		비 고
		계	공 장	창 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1,658㎡	1,200㎡	458㎡	7명	30명	

라.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자.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지역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군 의회 주례보고(4. 19.) → 일반의안 상정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16. 6월 중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6~9명)

○ 위·수탁 협약체결: 2016. 6월 말

○ 사업장 운영: 2016. 7. 1. ~ 2019. 6. 30. (3년)

○ 예산조치: 2016년 본예산에 운영비 등 반영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사업장은 종이 포장박스 일체를 생산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서, 대부분 거창군 공동 브랜드 박스를 생산하고 있고,

○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에서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16. 6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 수탁을 포기한 상태이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은 가능하나 지난 4월 19일 주례회의 보고 후 본 안건 처리 전에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과 위·수탁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계획하게 된 부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6 - 35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토지매입 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거창군의회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추가매입 토지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라 주변부지인 (구) 88고속도로 폐도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 등에 활용하기 위함.

3. 취득재산 현황

○ 당 초: 6필지 2,574㎡

(단위: ㎡, 원)

구분	재산종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지적	편입				
계		6필지		2,574	2,574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979-2	답	226	226	14,400	2015	공영차고지 주차면적 부족에 따른 부지매입	이 * 이
		거창읍 대평리 998-2	답	518	518	35,800			정 * 석
		거창읍 대평리 998-1	답	393	393	34,300			이 * 섭
		거창읍 대평리 997-2	답	567	567	36,700			정 * 석
		거창읍 대평리 980-2	답	349	349	14,900			이 * 정
		거창읍 대평리 981-2	답	521	521	35,800			김 * 순

○ 변 경: 6필지 2,574㎡ ⇒ 23필지 20,492㎡

- 추가취득 재산의 표시: 17필지 17,918㎡

(단위: ㎡, 원)

구분	재산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지적	편입				
계		17필지		17,918	17,91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476-19	도	54	54	4,950	2016 ~ 2017	주차면적 추가확보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96	도	2,055	2,055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88-1	도	1,001	1,001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8-8	도	1,742	1,742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394	도	6,310	6,31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9-7	도	134	134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1	도	74	74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	도	129	129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2-3	도	60	6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0-3	도	59	59	5,280			이 * 정외4
		거창읍 대평리 980-4	도	284	284	5,280			이 * 정외4
		거창읍 대평리 554-9	도	310	310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8	도	387	387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7	도	309	309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6	도	423	423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179-5	도	485	485	5,61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1	도	4,102	4,102	5,940			국토교통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 위 취득재산은 거창군의회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부지인 (구)88고속도로 폐도를 추가 편입하여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며

○ 주차장 확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하는 토지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6 - 35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동동근린공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6.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6. 24.

2.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공원 내 공설묘지 및 농경지의 진입로가 없어 사유지를 거쳐 진입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취득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산53	임	6,232	58,705	2016~2018	도로 개설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위 취득재산은 동동근린공원 내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개설하

여 이용자들이 인근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